

# 졸업유예운영규정

제정 2019.08.26

개정 2024.02.2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4(졸업의 유예)에 따라 졸업유예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졸업의 유예” (이하 “유예” 라 한다.)라 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학위취득 유예자” (이하 “유예자” 라 한다.)라 함은 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, 일정 기간 동안 학위취득을 유예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“학위취득의 유예” 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유예기간)** 유예는 졸업예정일로부터 한 학기 이내로 하며, 유예신청은 총 2회까지 할 수 있다.

**제5조(유예절차)** 유예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최종 허가한다.

**제6조(신청자격)** 신청자격은 학칙 제31조 및 교무규정 제42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**제7조(신청시기)** 2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, 3년제 학과는 3학년 2학기, 4년제 학과는 4학년 2학기 성적공고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.

**제8조(유예조건)** ①유예자는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.

②유예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무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24.2.26.>

**제9조(유예자 권리와 의무)** 유예자는 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**제10조(유예자의 졸업처리)**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유예를 한 경우 다음 학기 졸업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 사정하지 않으며, 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11조(기타사항)** ①유예자 중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직권취소하며, 당초 졸업예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한다.

②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.

③제2항에서 정한 유예 취소 시, 교무규정 제14조에 의해 징수한 등록금은 등록금징수규정 제6조에 따른다.

④유예자는 유예 기간 만료 후, 천재지변 등 특별히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및 학위를 수여 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

